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8 선고 2020가단1078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

변론 종결2020. 11. 27.

판결 선고2021. 1. 8.

주 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5. 9.자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7. 6. 12.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10. 접수 제45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2. 접수 제47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7. 6. 12.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2. 접수 제47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7. 4. 상가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 운영 관련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7,420,650원에 대해 2017. 1. 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의무를 고지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액은 2020. 2. 28. 기준 164,819,190원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2016. 5.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 A에게 201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5.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은 피고 B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A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①)	이 사건 아파트	148,000,000
이 사건 임야	16,650,100	
소계	164,650,100	
조세채무	117,420,650	
소극재산(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5,712,260
소계	203,132,910	
순자산(③ = ① - ②)		38,482,8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무자력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C이 D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조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D의 실제 운영자가 E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은 처음부터 피고 B이 취득하기로 하되 C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피고 B은 C에게 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C이 피고 B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선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C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미연

별지